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5. 9. 2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03호로 2025년 9월 8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과 늘어나는 청소년시설을 구
체적으로 조문화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 시설의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 명: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다. 시설의 설치·운영,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등(안 제4조 ~ 제6조)
- 라. 사용료 등, 운영 위탁, 수탁신청, 수탁자 선정 등(안 제7조 ~ 제10조)
- 마.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11조 ~ 제13조)
- 바. 위·수탁 협약, 운영 지원, 수탁자의 의무(안 제14조 ~ 제16조)
- 사.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운영규정의 제정 등(안 제17조 ~ 제19조)
- 아. 정산보고, 수당 등, 시행규칙(안 제20조 ~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 9. 3.~2025. 9. 1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시설의 구체적 종류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다음과 같음.

법령명	내용
청소년 보호법	• 시설명: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제35조) • 기능: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피해 청소년 치료와 재활 지원 • 설치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설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제29조) • 기능: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 설치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명: 청소년복지시설(제31조) • 시설의 종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설치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 진흥법	• 시설명: 청소년활동시설(제10조) • 시설의 종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 설치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시설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제13조) • 기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 설치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이에 영등포구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정(2007. 9. 27.) 당시 제5장(제26조~제31조, 총 6개 조문)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음.

○ 다만, 앞서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시설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영등포구립 청소년 시설 또한 3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총 10개소로 파악되고 있음.

종 류	기능	시 설 명
청소년 활동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전용공간 (5개소)	청소년자율문화공간(라라랜드), 청소년자율문화공간(언더랜드), 청소년자율문화공간(선유랜드), 청소년자율문화공간(대림플레이), 청소년자율문화공간(당산하이)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시설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 또한 청소년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는 등 청소년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기본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6개의 조문만으로 청소년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실제, 서울시 1)20개 자치구에서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관리하고자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기본조례 대비 신설·강화된 사항

구분	내용
신설된 사항	정의 규정: 청소년, 청소년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수탁자 정의
	시설별 명칭·위치·기능: 별표 1로 구체적 제시
	시설 이용 규정: 사용시간(09~22시), 회원제 운영 근거, 이용 제한 사유
	이용료 및 강습료 상한기준 미란: 별표 2·3(상한액·감면율)
	위원회 제도: 수탁자 선정위원회 설치, 운영, 제척·기피 규정
	위·수탁 협약 규정: 수탁자의 의무·승계·안전관리·해지 절차
	수탁자의 의무 규정: 부당징수 금지, 시설 변경 시 승인, 제3자 처분 금지
	운영 지원 규정: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운영비 지원 가능
	위탁 취소·해지 규정: 취소·해지 사유, 통보 시기, 환수조치
	운영규정 제정: 수탁자가 자체 규정 마련·승인받도록 규정
	정산보고: 분기별 보조금 집행 보고 및 회계처리 기준
강화된 사항	위원회 수당: 회의 출석 위원에게 수당 지급 가능
	시행규칙 위임: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위탁 절차 보강: 위탁기간(3년 이내) 명시, 재계약 신청 절차 신설
	수탁자 선정 보강: 심사·평가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 선정 방식 추가
	지도·감독 보강: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의무, 의견진술 기회 보장

1) 강남, 강동,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청소년, 청소년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수탁자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함.
- 안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는 영등포구립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별표에 명시함.
- 안 제5조(운영의 원칙)는 기본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함.
- 안 제6조(시설의 이용 등)는 ▲이용자 구분 ▲이용 제한 사유 ▲사용시간 규정 등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안 제7조(이용료 등)는 이용료 및 강습료 부과·징수 근거 및 반환기준을 마련하였고,
 - 안 별표 2 및 별표 3(이용료 상한 및 감면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이용료와 감면율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함.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운영 위탁, 수탁신청, 수탁자 선정 등)는 ▲위탁근거 마련 ▲수탁신청 절차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탁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척·회피 등)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포함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 안 제14조(위·수탁 협약)는 협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수탁 내용을 명확히 함.
- 안 제15조(운영 지원)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 또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16조(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의 운영 책임과 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운영규정 제정 등)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 안 제20조(정산보고)는 수탁자가 보조금 집행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5장(제26조~제31조)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 조문에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청소년시설 운영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청소년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이를 통해 청소년시설 운영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등포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

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

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 1. 21.]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사무
2.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반복적인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